

#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229
----------	------

2020년 3월 6일  
행정자치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 김상진 의원(찬성의원 11명)
- 나. 제안일 : 2019년 12월 17일
- 다. 회부일 : 2020년 1월 13일
- 라. 상정일 : 제291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 2월 28일 상정·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상진 의원)

###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고충민원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민원배심제를 운영하고 있음.
- 그 동안 훈령으로 규정하여 운영해오던 민원배심제에 대한 심의대상, 배심원 구성, 운영절차 및 기준, 결정효력 등 기본 운영절차를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요 직무인 고충민원 조사·처리의 한 방법으로서 민원배심제의 기능 정립(안 제2조).

- 나. 민원배심제의 신청, 배심원후보단과 배심원단의 구성, 민원배심의 운영 및 결정 등과 관련하여 절차 규정(안 제3조~안 제10조).
- 다. 민원배심의 공개, 민원배심결정의 효력, 처리결과의 통지 등을 규정(안 제11조~안 제15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규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참조).
- 다. 입법예고(2020.1.16.~2020.1.23.) 결과 : 의견 없음.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가. 조례 제정 필요성 검토

- 본 제정 조례안은 훈령(「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규정」[서울특별시훈령 제 1019호, 2019. 6. 27., 전부개정])에 의하여 운영 중인 현행 민원배심제도의 운영 근거를 조례로 상향 규정하려는 것임.
- 본 민원배심제의 운영 주체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이하 “「위원회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2016.2.4.)된 서울특별시장 소속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시정감시 및 고충민원의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음.

#### < 고충민원의 정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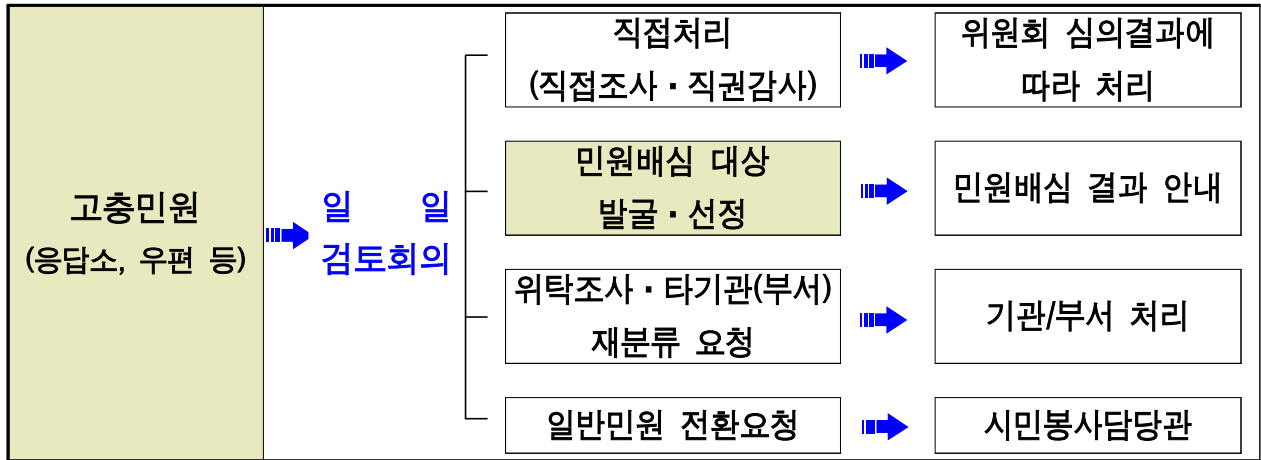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본 민원배심제는 위원회 주요 사무인 고충민원 처리의 한 방안으로, 민원 처리 과정에 외부 전문가와 시민 등의 참여를 통한 공정성 확보 및 처리결과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제고를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규정」(이하 “「민원배심제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시민참여형 민원구제 제도로서,
  - ※ 배심제: 재판 제도의 하나로,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 가운데서 선출된 배심원으로 구성된 배심에서 기소나 심판을 하는 제도(출처: 표준국어대사전)
  - ※ 민원배심제 연혁: 시민배심 민원법정 운영(2006.10.31. 시장 방침) → 「서울특별시 민원배심법정 운영 규정」 제정(2014.7.17.), 민원배심법정 → 전부개정(2019.6.27., 민원배심제)

< 고충민원 처리 흐름도 >



- 본 조례의 제정은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민원배심제의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원안 동의(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428, 2020.1.28.)

< 현행 「배심제 운영규정」 대비 본 조례안 주요 변경 사항 >

구 분	변경 전(훈령)	변경 후(조례안)
근거규정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규정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
목적	- 고충민원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민원배심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b>시민의 권익을 보호</b> - 고충민원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소하는 과정에 <b>시민의 참여</b> 를 높이기 위하여 민원배심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현행 민원배심제 운영 방법을 살펴보면,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동의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민원배심제 실시를 결정하고, 매회 배심원단(5~7명)을 구성하여 심리배심을 거쳐, 결정배심에서 재적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 사안을 관계기관에 권고 또는 의견표명 하는 과정을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있음.

< 민원배심제 개요 >

□ 목 적

- 입법의 미비점이 있거나 법령 해석 등이 명확하지 않아 관련기관·부서의 재량으로 판단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이 깊어 관

련기관의 민원처리를 신뢰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제3자인 배심원단의 주재 하에 민원인과 관련기관의 상호토론·질의응답 등을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고충민원을 해소하기 위함

**□ 관련근거**

- 민선4기 「시민배심 민원법정」 운영계획(시장방침 제453호, '06.10.31)
-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규정」 (훈령개정, '19.6.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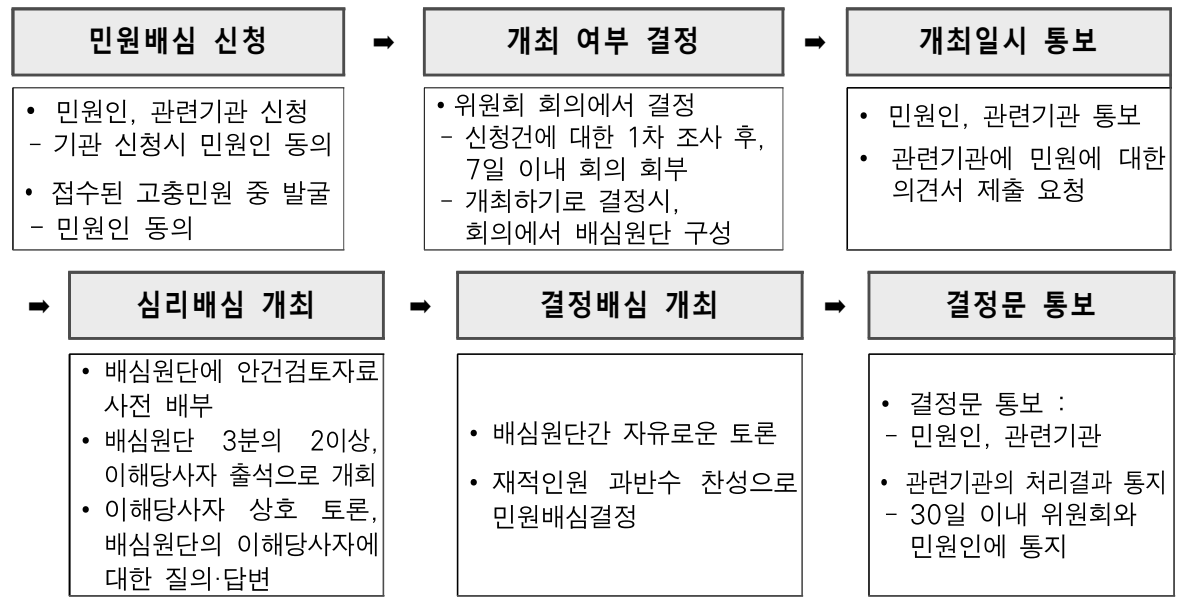
**□ 배심원단 구성**

- 배심원단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 회의를 통해 배심원후보단(현재 89명) 중에서 대표배심원 1명 포함 5명~7명 이내로 구성
- 배심원후보단은 100명 이내의 범위에서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 시민참여옴부즈만, 전문가배심원, 시민배심원으로 구성

**□ 민원배심제 운영**

- 민원배심은 민원인이 민원배심제를 통한 고충민원의 해결을 신청하는 경우 개최됨(관련기관·부서에서 신청하거나 이미 접수된 고충민원 중 민원배심안건으로 발굴하는 경우도 민원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고 있음)
  - 민원배심 신청 접수시, 위원회 회의를 통해 민원배심 개최 여부를 결정
-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운영총괄팀장 서기는 업무 담당자

**□ 업무흐름도**



**나. 조문별 세부 내용 검토**

- 본 조례안은 현행 「민원배심제 운영규정」 을 본 조례안으로 옮기면서 일부 조문의 배치 변경과 문구 수정 등을 통하여 정비한 것으로, 조문체계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조문체계 및 주요 내용>

조문 체계	주요 내용
제1조(목적)	-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민원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소하는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민원배심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제2조(정의)	- 민원배심제 - 이해당사자 - 참고인 - 심리배심 - 결정배심
제3조(적용범위)	- 적용대상 ▶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고충민원 - 심사 제외대상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재판 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에 있거나 끝난 사항 ▶ 이미 민원배심제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 또는 해당 결정에 대한 이의 사항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제4조(민원배심제의 신청)	- 고충민원에 대한 이해당사자(민원인, 관련기관·부서)의 민원배심제 신청 - 관련기관·부서(이하 ‘관련기관’이라 함) 신청의 경우, 민원인의 동의 필요
제5조(민원배심제의 실시 결정)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민원배심제 실시 여부 결정 - 민원배심제 직권 실시(민원인 동의) 또는 배제(조례 적용범위 외) 사항 - 민원배심제 실시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이해당사자에 통보
제6조(배심원후보단)	- 위원회 위원(시민감사옴부즈만, 시민참여옴부즈만, 전문가배심원·시민배심원으로 배심원후보단 구성(100명 이내) - 전문가배심원, 시민배심원은 구청장 또는 관련 단체 등 추천이나 공개모집 등의 방법으로 시장이 위촉(2년 임기, 2회 연임)
제7조(배심원단의 구성)	- 위원회는 대표배심원 1명 포함 5명 이상 7명 이내의 배심원단을 선정 - 구성시 관련 분야 및 전문성 고려(시민배심원은 거주지, 연령, 성별 등 고려)
제8조(대표배심원)	- 대표배심원은 민원배심제 개시부터 종료까지 배심원단 업무 총괄 - 심리배심, 결정배심 주관
제9조(민원배심의 운영 및 결정)	- 심리배심 : 배심원단 3분의 2이상과 이해당사자 출석한 가운데 대표배심원이 개최 - 결정배심 : 재적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관계기관장에 권고, 의견표명 등 결정
제10조(민원배심의 공개)	- 심리배심의 경우, 민원인 동의하는 경우 사안의 성격 고려하여 공개 결정 - 민원배심결정 : 원칙-공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제11조(민원배심결정의 효력 등)	- 민원배심결정은 위원회 의결에 따른 것으로 의제 - 민원배심결정 통보받은 관련기관의 장은 해당 결정을 최대한 반영 노력
제12조(처리결과 의 통지)	- 민원배심결정 통보받은 관련기관의 장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 또는 처리계획을 위원회와 민원인에 서면으로 통보
제13조(직권감사의 실시)	- 민원배심제 참여한 위원회 위원은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 감사 실시 여부를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수 있음
제14조(수당 등)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 대표배심원에 민원배심 결정문 작성 수당 등을 운영규정에 따라 지급 가능
제15조(운영 등)	-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음

## 1)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는 시민 권익 보호와 시민의 참여의 확대 등을 본 조례안의 목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음.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규정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안	비고
<p><b>제1조(목적)</b>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고충민원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민원배심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민원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소하는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민원배심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목적 명확화: 시민의 권익 보호 및 시민의 참여 확대 추가</p> <p>- 근거 조례 삭제</p>

- 다만, 민원배심제 제도가 위원회 주요 사무인 고충민원 처리의 한 방법으로서 운영되는 것임을 감안해 볼 때, 현 「민원배심제 운영규정」의 예와 같이 「위원회 운영 조례」를 본 조례의 근거로 제시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2)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는 조례상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민원배심제”, “이해당사자”, “참고인”, “심리배심”, “결정배심”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규정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안	비고
<p><b>제2조(정의)</b>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민원배심제”란 제5조에 따라 구성된 배심원단이 심리배심 및 결정배심을 거쳐 고충민원(「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제8조제5항에 따른 결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p>	<p><b>제2조(정의)</b>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민원배심제”란 고충민원(「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고충민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제7조에 따라 구성된 배심원단이 심리배심 및 결정배심을 거쳐 제9조제5항의 결정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p>	<p>- 고충민원의 정의를 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민감사청구에 관한 레」 제2조제1호를 준용</p>
<p>2. “이해당사자”란 민원배심제에 상정된 고충민원의 민원인(민원인이 다수여서 대표자를</p>	<p>2. “이해당사자”란 민원배심제에 상정된 고충민원의 민원인(민원인이 다수여서 대표자를</p>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규정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안	비고
선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및 해당 민원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부서(본청의 경우에는 과·담당관이, 그 밖의 경우에는 기관이 각각 이에 해당하며, 이하 “관련기관·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선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및 해당 민원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부서(본청의 경우에는 과·담당관이, 그 밖의 경우에는 기관이 각각 이에 해당하며, 이하 “관련기관·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3. “참고인”이란 이해당사자의 요청과 대표 배심원의 결정에 따라 심리배심에서 진술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심리배심”이란 이해당사자 간의 주장·반박 및 배심원단과 이해당사자 간의 질의·답변, 참고인의 진술 등을 통하여 민원배심제에 상정된 고충민원의 사안을 파악하는 과정을 말한다.	3. “참고인”이란 이해당사자의 요청과 대표 배심원의 결정에 따라 심리배심에서 진술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심리배심”이란 이해당사자 간의 주장·반박 및 배심원단과 이해당사자 간의 질의·답변, 참고인의 진술 등을 통하여 민원배심제에 상정된 고충민원의 사안을 파악하는 과정을 말한다.	
5. “결정배심”이란 이해당사자 없이 배심원단만 참석하여 고충민원에 대하여 제8조제5항에 따른 결정을 하는 과정을 말한다.	5. “결정배심”이란 배심원단이 고충민원에 대하여 제9조제5항에 따른 결정을 하는 과정을 말한다.	문구 수정 및 불필요한 부분 삭제

○ 다만, ‘고충민원’의 정의에 대하여 현 「민원배심제 운영규정」에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고, 본 조례안에서는 「위원회 운영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려고 하나, 조문 해석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고충민원을 직접 정의하고 있는 법률\*을 준용함으로써 조문 해석 근거를 명료하게 제시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 <고충민원 준용 관련 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규정
<b>제2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	<b>제2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생략)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b>제2조(정의)</b>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을 말한다.	<b>제2조(정의)</b>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배심제”란 제5조에 따라 구성된 배심원단이 심리배심 및 결정배심을 거쳐 고충민원(「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규정
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른 고충민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제8조제5항에 따른 결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

### 3) 적용 범위, 민원배심제의 신청(안 제3조, 안 제4조)

-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현 「민원배심제 운영규정」 제3조(민원배심제 신청)에서 규정한, 민원배심제의 신청과 적용 범위를 안 제3조(적용 범위)와 안 제4조(민원배심제의 신청)로 나누어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규정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안	비고
<p>제3조(민원배심제 신청) ① 이해당사자는 고충민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민원배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미 민원배심제를 통하여 결정한 사항 또는 해당 결정에 대한 이의사항</li> <li>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li> </ol> <p>② <u>관련기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민원배심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민원인의 동의를 있어야 한다.</u></p> <p>③ 민원인이 별도의 고충민원 신청 없이 제1항에 따라 민원배심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고충민원 신청으로 본다.</p>	<p><b>제3조(적용 범위)</b>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고충민원의 해결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li> <li>2. 재판 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에 있거나 끝난 사항</li> <li>3. 이미 민원배심제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 또는 해당 결정에 대한 이의 사항</li> <li>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li> </ol> <p><b>제4조(민원배심제의 신청)</b> ① 이해당사자는 고충민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민원배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배심제를 신청하는 이해당사자가 <u>관련기관·부서인 경우에는 고충민원의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u></p> <p>② 민원인이 고충민원의 신청 없이 제1항에 따라 민원배심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고충민원의 신청으로 본다.</p>	<p>- 제3조(적용 범위) 신설 : 현 운영규정 제3조(민원배심제 신청) 제1항 단서에서 신청제외대상으로 규정했던 내용을 제3조(적용 범위)로 규정하여 적용 범위를 명확화</p> <p>- 조례안 제4조제1항은 현 운영규정 제3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내용을 합쳐서 민원배심제 신청 방법을 정리</p>

#### 4) 민원배심제의 실시 결정(안 제5조)

- 안 제5조는 민원배심제의 실시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결정 기한(제1항 및 제2항, 7일이내, 연장에 관한 사항), 실시 배제 사유(제3항, 개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 직권 실시(제4항), 실시 여부 통보 기한(제5항, 7일 이내) 등을 규정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규정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안	비고
<p><b>제4조(민원배심제 실시 결정 및 통지)</b> ① 위원회는 이해당사자가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원배심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b>제5조(민원배심제의 실시 결정)</b> ① 위원회는 이해당사자가 제4조제1항에 따라 민원배심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 조의 제목 변경: 민원배심제 실시 결정 및 통지 -&gt; 민원배심제의 실시 결정 - 제3조제1항 -&gt; 제4조제1항으로 조문 변경에 따른 문구수정</p>
<p>② 위원회는 민원배심제 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결정기간을 14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다시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p>	<p>② 위원회는 민원배심제의 실시 결정을 위해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실시 여부의 결정 기간을 14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p>	<p>문구 정비</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원배심제가 신청된 고충민원이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민원배심제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p>	<p>③ 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라 민원배심제를 신청한 고충민원이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민원배심제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p>	<p>문구 정비</p>
<p>④ 위원회는 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 중 민원배심제를 통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민원배심제 실시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민원배심제의 실시를 위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민원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p>	<p>④ 위원회는 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 가운데 민원배심제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민원의 경우 해당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민원배심제의 실시를 결정할 수 있다.</p>	<p>문구 정비: 중복되는 문구 삭제 및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리</p>
<p>⑤ 위원회는 민원배심제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해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위원회는 민원배심제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실시 여부를 이해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문구 정비: “그 결과” -&gt; “그 실시 여부”</p>

5) 배심후보단, 배심원단의 구성, 대표배심원(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민원배심제의 배심원 자격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배심원후보단(안 제6조), 배심원단의 구성(안 제7조), 대표배심원(안 제8조), 민원배심제 운영 및 결정(안 제9조)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현 「민원배심제 운영규정」 사항을 본 조례안으로 규정하면서 조문 배치 변경과 문구 수정 등을 통하여 조문 체계에 맞도록 정비한 것임.
- 먼저, 안 제6조는 일반 시민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배심원후보단(시민감사옴부즈만, 시민참여옴부즈만, 전문가배심원, 시민배심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시민의 참여를 높이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로 볼 때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며,

< 현행 배심원후보단 유형별 현황 >

총 인원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	시민참여 옴부즈만	전문가배심원	시민배심원
89명	6명	35명	21명	27명

- 안 제7조는 배심원단 구성(5명 이상 7명 이내) 시 배심원후보단 유형별로 1명 이상 선정하되 한 유형에 3명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다양한 분야의 배심원이 선정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안 제7조제1항에서는 배심원단의 구성에 있어서, 공정한 민원 배심제 운영을 위하여 배심원단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 안 제8조는 대표배심원의 역할로 배심원단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배심 진행을 주관하며 필요시 현장조사 및 참고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규정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안	비고
제6조(배심원후보단의 구성) ① 배심원후보단은 100명 이내의 범위에서 시민감사옴부즈만	제6조(배심원후보단) ① 시장은 100명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로 구성되는 배심원후보	조의 제목 변경 : 배심원후보단의 구성 ->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규정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안	비고
<p>위원, 시민참여옴부즈만, 전문가배심원, 시민배심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전문가배심원은 복지, 환경·교통, 주택·건축, 도시계획, 공공갈등 등 각 분야에서 교수, 변호사, 세무사, 기술사(건축사를 포함한다) 등의 자격과 실무경력을 겸비한 전문가로서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법조계 등의 추천이나 공개모집 등의 방법으로 후보군을 구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p> <p>③ 시민배심원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 주소가 등재 되어 있고 「공직선거법」 상 선거권이 있는 시민 중에서 구청장의 추천이나 공개모집 등의 방법으로 후보군을 구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p>	<p>단을 구성할 수 있다.</p> <p>1. 위원회 위원</p> <p>2.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민참여옴부즈만</p> <p>3. 전문가배심원: 복지, 환경·교통, 주택·건축, 도시계획, 공공갈등 등 각 분야에서 교수, 변호사, 세무사, 기술사(건축사를 포함한다) 등의 자격과 실무경력을 두루 갖춘 전문가</p> <p>4. 시민배심원: 「공직선거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및 시장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p> <p>② 전문가배심원 및 시민배심원은 자치구청장 또는 관련 단체 등의 추천이나 공개모집 등의 방법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p>	<p>배심원후보단</p> <p>개정안 제6조제1항은 각 호를 신설하여 현 배심원후보단 구성을 열거함</p> <p>- 개정안 제6조제2항은 현 운영규정 제6조제2항과 제3항을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 필요 없는 문구를 삭제</p>
<p>④ 전문가배심원과 시민배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③ 전문가배심원 및 시민배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접속조사 “과”를 “및”으로 변경</p>
<p><b>제5조(배심원단의 구성)</b> ① 위원회는 민원배심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배심원후보단 중 5인 이상 7인 이하를 선정하여 배심원단을 구성하되, 각각 1명 이상 3명 이하의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 시민참여옴부즈만, 전문가배심원, 시민배심원을 포함한다.</p>	<p><b>제7조(배심원단의 구성)</b> ① 위원회는 민원배심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대표배심원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배심원단을 선정한다.</p> <p>② 배심원단은 제6조에 따른 배심원후보단 중에서 선정하되,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3명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p>	<p>- 현 운영규정 제5조(배심원단의 구성) 규정을 제7조로 이동</p> <p>현 제5조제1항 내용을 개정안 제7조제1항과 제2항으로 나누어 규정</p> <p>현 제5조제3항 내용을 제7조제1항에 포함</p>
<p>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배심원단을 구성하는 경우,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과 시민참여옴부즈만, 전문가배심원은 관련 분야 및 전문성을 고려하고, 시민배심원은 거주지,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한다.</p>	<p>③ 위원회는 배심원단을 구성하는 경우 관련 분야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시민배심원은 거주지,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p>	<p>개정안 제7조제3항은 현 운영규정 제5조제2항의 문구 수정: 중복 문구 삭제</p>
<p>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구성한 배심원단 중 1명을 대표배심원으로 선정한다.</p>	<p>&lt; 제1항에 포함 &gt;</p>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규정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안	비고
<p><b>제7조(대표배심원의 임무)</b> ① 대표배심원은 민원배심제를 실시하는 때부터 제8조제7항에 따라 민원배심결정을 통보하는 때까지 배심원단을 대표하고, 배심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대표배심원은 심리배심 및 결정배심을 주관하고 심리배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이해당사자의 교체, 퇴장, 방청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③ 대표배심원은 민원배심제 상정된 고충민원의 사안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배심원단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거나 심리배심에서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p>	<p><b>제8조(대표배심원)</b> ① 대표배심원은 민원배심제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배심원단을 대표하고, 배심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대표배심원은 심리배심 및 결정배심을 주관하고, 배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이해당사자의 교체, 퇴장, 방청제한 등의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p> <p>③ 대표배심원은 고충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배심원단과 함께 현장을 조사하거나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조의 제목 변경: 대표배심원의 임무 -&gt; 대표배심원 문구 수정</p>

- 다만, 2019년도 민원배심제 운영 실적을 보면, 4회 개최에 배심원 후보단 89명 중 21명만 배심원단으로 선정되어 참여율이 23.6%에 그치고 있는바, 배심원후보단의 위축 규모(100명, 임기 2년(1회 연장 가능))를 지나치게 과대 편성함으로써 행정력 낭비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하겠음.

※ 2019년 민원배심제 배심원후보단 89명 중 21명 배심원단에 참여(23.6%)[붙임1 참조]

- 한편, 현행 민원배심제에 상정된 고충민원의 인용(권고)률을 보면, 총 33건 중 25건이 인용되어 인용률이 75.6%에 이르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장기간 해소되지 못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지나치게 민원 해소에 역점을 둠으로써 행정의 공정력\*을 훼손할 우려에 대해서도 방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공정력: 행정 행위가 행하여지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절대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 상대방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통용되는 힘(출처: 표준국어대사전)

**< 민원배심제 결정 유형별 현황 >**

구분 연도	상정 안건	개최결과				
		인 용(권고)				기각
		계	인용	일부 인용	조정 중재	
계	33	25	12	9	3	8
2019년	4	4	1	3		
2018년	9	6	3	2	1	3
2017년	12	8	6	1	1	4
2016년	8	7	2	4	1	1

※ 「민원배심제 운영규정」 최근 개정(2019.6.27.) 이전에는 민원배심결정의 종류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실무상 인용, 일부인용, 조정·중재, 기각으로 사용

- 또한, 현행 배심후보단(붙임2 참조)의 여성 점유율은 24.7%에 그치고 있는바, 비록 위원회는 아니라고는 하나, 배심후보단 운영에 있어 「양성평등 기본법」의 취지를 감안한 성별 비율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현행 배심후보단 종류별 성비 점유 분석 자료 >**

배심후보단	합계 (점유비)	남성 인원수	여성 인원수	여성 비율(%)
합계	89 (100.0)	67	22	24.7
시민감사옴부즈만	6 (6.7%)	2	4	66.7
시민참여옴부즈만	35 (39.3%)	28	7	20.0
전문가배심원	21 (23.6%)	20	1	4.8
시민배심원	27 (30.3%)	17	10	37.0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



**「양성평등기본법」**

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직종·직급·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2. 관리직 남녀 비율 현황
3. 남녀 직원 근속연수 현황
4. 승진 대상자 중 남녀의 승진 비율
5. 남녀 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임용 목표 및 달성 시기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민원배심의 운영 및 결정(안 제9조)**

- 안 제9조는 민원배심제의 결정 과정에 있어서, 심리배심 개최 요건(배심원단의 3분의 2이상과 이해당사자의 출석)과, 결정배심 요건(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 민원배심 결정 기한(실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1회 연장 가능)) 및 통보기한(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등을 규정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규정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안	비고
<p><b>제8조(배심의 운영 등)</b> ① 심리배심은 배심원단 3분의 2 이상 및 이해당사자가 출석한 가운데 대표배심원이 개최한다.</p>	<p><b>제9조(민원배심의 운영 및 결정)</b> ① 심리배심은 배심원단의 3분의 2 이상과 이해당사자가 출석한 가운데 대표배심원이 개최한다.</p>	<p>조의 제목 변경: 배심의 운영 등 -&gt; 민원배심의 운영 및 결정 문구 수정</p>
<p>② 대표배심원은 이해당사자간의 주장 및 반박, 배심원단과 이해당사자 간의 질의·답변, 참고인의 진술 등을 통하여 고충민원의 사안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심리배심을 진행하여야 한다.</p> <p>③ 대표배심원은 의사결정을 위한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심원단의 의결로써 추가 심리배심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심리배심에는 이해당사자를 출석시키지 않을 수 있다.</p>	<p>② 대표배심원은 이해당사자간의 주장 및 반박, 배심원단과 이해당사자 간의 질의·답변, 참고인의 진술 등을 통하여 고충민원의 사안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심리배심을 진행하여야 한다.</p> <p>③ 대표배심원은 의사결정을 위한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심원단의 의결로써 추가 심리배심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심리배심에는 이해당사자를 출석시키지 않을 수 있다.</p>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규정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안	비고
④ 대표배심원은 심리배심을 <u>종료하고</u> 결정 배심을 진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해당사자를 퇴장시켜야 한다.	④ 대표배심원은 심리배심을 <u>마치고</u> 결정 배심을 진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해당사자를 퇴장시켜야 한다.	문구 수정
<p>⑤ 배심원단은 결정배심에서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민원배심제에 상정된 고충 민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결정(이하 “민원배심결정”이라 한다)을 한다.</p> <p>1. 시정권고 :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관련기관·부서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p> <p>2. 의견표명 : 민원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기관·부서의 장에게 의견표명</p> <p>3. 제도개선 권고 또는 의견표명 : 제도 또는 정책 등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기관·부서의 장에게 제도 등의 개선을 권고 또는 의견표명</p> <p>4. 기각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p>	<p>⑤ 배심원단은 결정배심에서 상정된 고충 민원에 대하여 시정 또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계기관·부서의 장에게 이를 권고하거나 의견표명(이하 “민원배심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p>	<p>현 운영규정상 각 호로 열거되어 있던 민원배심결정의 종류를 본문에 간단하게 표현하여 이해하기 쉽게 문구를 정리함</p>
⑥ 배심원단은 민원배심제 실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u>민원배심결정을 한다. 다만, 대표배심원은 민원배심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결정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u>	⑥ <u>민원배심결정은 민원배심제 실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배심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심원단의 의결로써 그 결정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u>	문구 수정
⑦ 위원회는 민원배심결정을 그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해당사자에게 <u>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u> 통보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민원배심결정을 그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해당사자에게 <u>통보하여야 한다.</u>	문구 수정

- 안 제9조제5항의 민원배심결정의 형태를 보면, 현 「민원배심제 운영 규정」에서는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 권고 또는 의견표명’, ‘기각’으로 구분하여 각 호에 열거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 본문에서는 ‘권고 또는 의견표명’으로 간략하게 규정하였음.
- 제정안과 같이 간결하게 규정할 경우 시민들이 더 쉽게 인지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조례의 명확성 확보를 위하여 결정 종류를 명확히 열거하고,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필요 조치사항을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7) 민원배심의 공개(안 제10조)

- 안 제10조는 민원배심제의 운영에 있어서 심리배심의 경우 민원인이 동의하는 경우 사안의 성격을 고려하여 공개 여부를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민원배심결정 사항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법령에 따라 비공개 대상일 경우에 한하여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규정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안	비고
<p><b>제9조(민원배심제 공개)</b> ① 위원회는 민원인이 민원배심제 신청 시 심리배심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안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심리배심의 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p> <p>② 위원회는 민원배심결정 결과를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b>제10조(민원배심의 공개)</b> ① 위원회는 민원인이 민원배심제 신청 시 심리배심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안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심리배심의 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p> <p>② 위원회는 민원배심결정의 결과를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조의 제목 수정: 민원배심제 공개 -&gt; 민원배심의 공개</p>

### < 민원배심결정 비공개 대상 >

<p><b>「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b></p> <p>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li> <li>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li> <li>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li> <li>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li> <li>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li> <li>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li> </ol>
--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8) 민원배심결정의 효력 등(안 제11조)

- 안 제11조는 민원배심제결정의 효력 등을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는 ‘민원배심결정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고충민원에 대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의결 방법의 하나로 민원배심제를 의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위원회 기능 중 민원배심제 운영 사항을 별도 조례로 제정한 것인바, 본 조례 제정 이후 「위원회 운영 조례」에 본 민원배심제의 운영 근거를 규정하여 의결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 < 현행 「위원회 운영 조례」 >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3조(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정감시, 고충민원 조사, 주민의 감사청구에 따른 감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합의제행정기관인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감사조사 및 공공사업 감사·평가의 계획과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2. 징계징계부가금 및 문책, 변상명령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
  3. 시정, 제도개선 등의 요구, 권고 및 의견표명 등에 관한 사항
  4. 적극행정 면책 및 재심에 관한 사항
  5. 위원회 사무기구의 조직 및 정원 요구에 관한 사항
  6. 위원회의 예산 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8. 위원의 제척·기피에 관한 사항
  9. 시민감사청구사항 감사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 또는 위원이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 또한 안 제11조제2항에서는 관계기관은 민원배심결정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민원배심결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관련기관 등이 감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경우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이는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는 권고적 임의규정을 들어 법적 구속력 없는 민원배심결정에 대한 수용여부 결정 부담을 관련기관 등에 떠넘기는 결과가 될 것인바,
- 민원배심결정의 관련기관 구속력 및 배심원단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의결의 법적 구속력 부여 요건 >

[ 자치법규 입안매뉴얼, 법제처, 2013년도 ]

위원회는 여러 사람이 참여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조직체로서 '의결한다'는 규정은 위원회의 의사결정 방식을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 '의결한다'는 규정을 두더라도 위원회의 결정이 행정관청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의결기관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의결기관으로 인정되려면 위원회의 결정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려면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

- ※ 한편, 안 제13조에서는 민원배심제 참여 위원은 필요에 따라 직권감사 실시여부를 위원회 회의에 부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위원회 운영 조례」 및 본 조례안 어디에도,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정의나 범위 또는 준용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바, 조례의 명확성 확보를 위하여 적극행정 면책 규정의 준용 등 관련 규정의 보완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적극행정 면책 관련 규정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시행 2019. 8. 6.] [대통령령 제30018호, 2019. 8. 6., 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적극행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5조(징계 요구 등 면책) 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②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3조에 따른 감사를 받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 등의 처분요구를 하지 않는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없었을 것

④ 공무원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사전컨설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규정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안	비고
제10조(민원배심결정의 효력 등) ① 민원배심 결정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11조(민원배심결정의 효력 등) ① 민원배심 결정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규정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안	비고
② 민원배심결정에 따라 제8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이하 “권고 또는 의견표명”이라 한다)을 통보받은 관련기관·부서의 장은 상위법령에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결정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민원배심결정을 통보받은 관련기관·부서의 장은 상위법령에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결정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문구 수정
③ 민원배심결정을 수용하여 업무를 처리한 관련기관·부서의 업무담당자는 감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민원배심결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관련기관·부서의 업무담당자는 감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문구 수정
④ 민원배심결정은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다른 구제절차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④ 민원배심결정은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다른 구제절차를 배제하지 않는다.	

## 9) 처리결과와 통지(안 제12조)

- 안 제12조는 관계기관 등은 민원배심제결정 통보 후 30일 이내에 처리결과 또는 불수용(위원회와 사전 협의 필요)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불수용 시 위원회 사전협의를 전제하는 것이 관계기관 등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와 서면통지 외 SNS 등 통지 수단의 다변화를 모색할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규정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안	비고
<b>제11조(처리결과와 통지)</b> ①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통보받은 관련기관·부서의 장은 민원배심결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 또는 처리계획을 위원회와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b>제12조(처리결과와 통지)</b> ①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통보받은 관련기관·부서의 장은 민원배심결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 또는 처리계획을 위원회와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련기관·부서의 장은 상위법령에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민원배심결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와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b>다만, 이 경우 통지 전에 위원회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b>	② 관련기관·부서의 장은 상위법령에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민원배심결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와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u>관련기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 전에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u>	문구 수정 현 운영규정 제11조제2항을 조례안 제12조제2항과 제3항으로 분리하여, 단서 조항을 별도 조항으로 규정

## 10) 직권감사의 실시(안 제13조)

- 안 제13조는 배심원단에 구성된 위원회 위원(시민감사옴부즈만)이 민원배심 결정과는 별도로 직권 감사 실시 여부를 위원회 회의에 부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본 규정을 최초 설치(「민원배심제 운영규정」 전부개정(2019.6.27.))한 취지를 보면, ‘직권감사 실시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민원배심결정의 권고적 효력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전부개정 (2019.6.27.)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규정	<p>가. “민원배심법정”의 명칭을 “민원배심제”로 변경</p> <p>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요 직무인 고충민원 조사·처리의 한 방법으로서 민원배심제의 기능 정립(제1조)</p> <p>다. 민원배심제의 신청, 배심원단의 구성, 배심의 운영, 민원배심결정 등과 관련하여 절차 규정 보완(제3조~제11조)</p> <p>라. 직권감사 실시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민원배심결정의 권고적 효력 보완(제12조)</p>
----------------------	-------------------------	---

※ 출처: 2019년 행정사무감사자료 20페이지(소관 법규 개정 등 현황)

- 민원배심법정 업무지침에 따르면, 위법·부당성이 없는 처분에 대한 고충민원 등을 안건으로 발굴하여 조정·중재함으로써 차선책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3년간 고충민원 인용(권고)율이 75.6%에 이르고 있는바, 본 조항이 관련기관의 민원배심 결정 수용을 지나치게 강제하는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민원배심법정 업무지침(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6780(2018.5.15.))

(안전 발굴시 판단 기준)

- 위법·부당성이 명확하지 않고 모호한 측면이 있어 해석의 여지 및 재량의 여지가 있는 경우
- 위법·부당성이 없는 것은 명확하나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어 차선책 마련을 위한 조정·중재의 여지가 있는 경우
- 처분기관의 공무원 및 행정시스템에 대해 불신하면서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민원으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소통과 공감의 장 마련이 필요한 경우



※ 한편, 현행 민원배심제 상정 고충민원 인용(권고)률을 보면, 총 33건 중 25건을 인용하여 인용률이 75.6%에 이르고 있음.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규정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안	비고
<b>제12조 (직권감사의 실시)</b> 민원배심제에 참여한 <b>시민감사유부즈만</b> 위원은 민원배심결정과는 <b>별도로</b>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직권 감사 실시 여부를 위원회의 회의에 <b>상정</b> 할 수 있다.	<b>제13조 (직권감사의 실시)</b> 민원배심제에 참여한 <b>위원회</b> 위원은 민원배심결정과는 <b>따로</b>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직권 감사 실시 여부를 위원회의 회의에 <b>부칠</b> 수 있다.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

### 11) 수당 등(안 제14조)

- 안 제14조는 배심원단에 대하여 수당 및 여비를, 대표배심원에게는 민원 배심 결정문 작성 수당 등을 본 조례안에 따른 운영규정에서 정한바 대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규정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안	비고
<b>제15조(수당 등)</b> 배심원단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위원회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b>제14조(수당 등)</b> ① 배심원단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및 여비 이외에 대표배심원에게는 민원배심 결정문 작성 수당 등을 운영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조례안 제14조제2항에 대표배심원 수당 규정을 명시 조례안 제14조제1항 조례 명칭 띄어쓰기 수정

- 본 민원배심제는 고충민원 처리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제도로서 별개의 위원회로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위원회 출범(2016.2.4.) 이후 현재까지 민원배심제 배심원단 등에 대하여 훈령(「민원배심제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회의참석 수당 등을 지급해오고 있는바, 수당 지급근거를 본 조례로 규정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민원배심제 배심원단 수당 지급 내역은 붙임1 참조

## 12) 운영 등(안 제15조)

- 안 제15조는 본 민원배심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현행 「민원배심제 운영 규정」의 간사와 서기, 운영대장의 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임.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규정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안	비고
<p><b>제13조(간사와 서기)</b> ① 민원배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둔다.</p> <p>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민원배심제 업무를 소관하는 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업무의 담당자로 한다.</p> <p><b>제14조(운영대장의 관리)</b> 간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민원배심제 신청서 접수에 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p>	<p><b>제15조(운영 등)</b>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p>	<p>현 운영규정 제13조(간사와 서기), 제14조(운영대장의 관리) 규정 삭제</p> <p>현 운영규정 제13조, 제14조를 비롯한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15조에 규정</p>

## 13) 부칙

- 안 부칙 제1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규정하면서, 제2조에서는 현행 운영규정에 따라 실시중인 민원배심후보단 및 민원배심원단의 구성과 현재 실시중인 민원배심 중인 사항은 본 조례(안)에 따른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제도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규정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안	비고
<p>부칙 &lt;제1019호,2019.6.27.&gt;</p> <p><b>제1조(시행일)</b>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경과조치)</b> ① 이 규정의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민원예비배심원단은 이 규정에 따른 배심원후보단으로 본다.</p>	<p>부 칙</p> <p><b>제1조(시행일)</b>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경과조치)</b>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민원배</p>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규정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안	비고
<p>② 제1항에 따라 배심원후보단으로 보는 전문가배심원 및 시민배심원의 임기 시작일은 이 규정의 시행일로 한다.</p>	<p>심제 운영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배심원후보단 및 민원배심원단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p> <p>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규정」에 따라 구성된 민원배심원단이 실시한 민원배심제 및 실시중인 민원배심제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p>	

- 종합적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민원배심제의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하여 조속한 제정은 필요하다 할 것이나, 민원배심제의 위원회로서 운영 필요성 여부 및 민원배심결정의 관계기관 구속력 마련 등 의결기구로서의 민원배심제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규정 보완 필요성에 대한 검토 등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지속적인 제도 보완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안

(김상진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229
----------	------

발의년월일 : 2019년 12월 17일

발 의 자 : 김 상 진 의 원 (1명)

찬 성 자 : 이상훈, 서윤기, 김정태,  
김인제, 박순규, 경만선,  
김인호, 김광수, 문영민,  
김태수, 유 용 의원 (11명)

##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고충민원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민원배심제를 운영하고 있음.

그 동안 훈령으로 규정하여 운영해오던 민원배심제에 대한 심의대상, 배심원 구성, 운영절차 및 기준, 결정효력 등 기본 운영절차를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요 직무인 고충민원 조사·처리의 한 방법으로서 민원배심제의 기능 정립(안 제2조).
- 나. 민원배심제의 신청, 배심원후보단과 배심원단의 구성, 민원배심의 운영 및 결정 등과 관련하여 절차 규정(안 제3조~안 제10조).

다. 민원배심의 공개, 민원배심결정의 효력, 처리결과의 통지 등을 규정(안 제11조~안 제15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규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민원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소하는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민원배심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배심제”란 고충민원(「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고충민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제7조에 따라 구성된 배심원단이 심리배심 및 결정배심을 거쳐 제9조제5항의 결정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이해당사자”란 민원배심제에 상정된 고충민원의 민원인(민원인이 다수여서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및 해당 민원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부서(본청의 경우에는 과·담당관이, 그 밖의 경우에는 기관이 각각 이에 해당하며, 이하 “관련기관·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3. “참고인”이란 이해당사자의 요청과 대표배심원의 결정에 따라 심리배심에서 진술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심리배심”이란 이해당사자 간의 주장·반박 및 배심원단과 이해당사자 간의 질의·답변, 참고인의 진술 등을 통하여 민원배심제에 상정된 고충민원의 사안을 파악하는 과정을 말한다.

5. “결정배심”이란 배심원단이 고충민원에 대하여 제9조제5항에 따른 결정을 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고충민원의 해결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2. 재판 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끝난 사항
3. 이미 민원배심제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 또는 해당 결정에 대한 이의 사항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제4조(민원배심제의 신청)** ① 이해당사자는 고충민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민원배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배심제를 신청하는 이해당사자가 관련기관·부서인 경우에는 고충민원의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민원인이 고충민원의 신청 없이 제1항에 따라 민원배심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고충민원의 신청으로 본다.

**제5조(민원배심제의 실시 결정)** ① 위원회는 이해당사자가 제4조제1항에 따라 민원배심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민원배심제의 실시 결정을 위해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는 제1항에 따른 실시 여부의 결정 기간을 14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라 민원배심제를 신청한 고충민원이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민원배심제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 가운데 민원배심제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민원의 경우 해당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민원배심제의 실시를 결정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민원배심제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실시 여부를 이해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배심원후보단)** ① 시장은 100명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로 구성되는 배심원후보단을 구성할 수 있다.

1. 위원회 위원

2.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민참여옴부즈만

3. 전문가배심원: 복지, 환경·교통, 주택·건축, 도시계획, 공공갈등 등 각 분야에서 교수, 변호사, 세무사, 기술사(건축사를 포함한다) 등의 자격과 실무경력을 두루 갖춘 전문가

4. 시민배심원: 「공직선거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원 및 시장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

② 전문가배심원 및 시민배심원은 자치구 구청장 또는 관련 단체 등의

추천이나 공개모집 등의 방법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가배심원 및 시민배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배심원단의 구성)** ① 위원회는 민원배심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대표배심원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배심원단을 선정한다.

② 배심원단은 제6조에 따른 배심원후보단 중에서 선정하되,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3명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배심원단을 구성하는 경우 관련 분야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시민배심원은 거주지,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대표배심원)** ① 대표배심원은 민원배심제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배심원단을 대표하고, 배심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배심원은 심리배심 및 결정배심을 주관하고, 배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이해당사자의 교체, 퇴장, 방청제한 등의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대표배심원은 고충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배심원단과 함께 현장을 조사하거나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민원배심의 운영 및 결정)** ① 심리배심은 배심원단의 3분의 2 이상과 이해당사자가 출석한 가운데 대표배심원이 개최한다.

② 대표배심원은 이해당사자간의 주장 및 반박, 배심원단과 이해당사자간의 질의·답변, 참고인의 진술 등을 통하여 고충민원의 사안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심리배심을 진행하여야 한다.

③ 대표배심원은 의사결정을 위한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심원단의 의결로써 추가 심리배심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심리배심에는 이해당사자를 출석시키지 않을 수 있다.

④ 대표배심원은 심리배심을 마치고 결정배심을 진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해당사자를 퇴장시켜야 한다.

⑤ 배심원단은 결정배심에서 상정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계 기관·부서의 장에게 이를 권고하거나 의견표명(이하 “민원배심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⑥ 민원배심결정은 민원배심제 실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배심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심원단의 의결로써 그 결정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민원배심결정을 그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해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민원배심의 공개)** ① 위원회는 민원인이 민원배심제 신청 시 심리배심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안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심리배심의 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민원배심결정의 결과를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민원배심결정의 효력 등)** ① 민원배심결정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



른 것으로 본다.

② 민원배심결정을 통보받은 관련기관·부서의 장은 상위법령에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결정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원배심결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관련기관·부서의 업무담당자는 감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민원배심결정은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다른 구제절차를 배제하지 않는다.

**제12조(처리결과와 통지)** ①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통보받은 관련기관·부서의 장은 민원배심결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 또는 처리계획을 위원회와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련기관·부서의 장은 상위법령에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민원배심결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와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련기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 전에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직권감사의 실시)** 민원배심제에 참여한 위원회 위원은 민원배심결정과는 따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직권 감사 실시 여부를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① 배심원단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및 여비 이외에 대표배심원에게는 민원배심 결정문 작성 수당 등을 운영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 등)**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배심원후보단 및 민원배심원단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규정」에 따라 구성된 민원배심원단이 실시한 민원배심제 및 실시중인 민원배심제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